

해외 여행보험 요약약관(실손보상)

상해	사망	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	
	후유장해	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~100%를 지급	
	해외	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[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]	
질병	사망	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보상	
	해외	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[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]	
상해/ 질병	국내	급여 (입,통원(외래)·처방조제)	<p>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,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 일 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(180 일간/ 통원 90 회)</p> <p>※입원(5천/3천/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부담금의 80% 보상 <p>※통원(20만/15만/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</p> <p>[방문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공제금액(본인부담금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보건소·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병원급 -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 - 전문요양기관,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-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 - 보조기구 (목발, 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		비급여 (입,통원(외래)·처방조제)	<p>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,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,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(3대 비급여는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</p> <p>보험기간 종료 후 30 일 이내 의사의 치료시작일로부터 (180 일간 90 회)</p> <p>※입원(5천/3천/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급여 의료비의(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'본인부담액') 70% 해당액 - 상급병실료 차액: 비급여 병실료의 50 %/ 보상 1 일 평균 10 만원 한도 <p>※통원(20만/15만/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)</p> <p>[방문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공제금액(본인 부담금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원, 병원, 요양병원, 조산원, 병원급, 종합병원,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약국 -최소3만원과 30%중 큰 금액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 - 한의원, 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- 보조기구 (목발, 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- 입(통)원시 5천만(20만)/ 3천만(15만)/ 1천만(10만)/ 5백만(5만) 中 보상

<p>코로나로 인한 보상불가 (면책)</p>	<p>1.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자가격리 했을 경우 - 자가격리비는 치료비항목 대상제외 (치료비 및 약제비는 접수가능) - 구조송환비용(특별비용) 보상불가: 입원대상 제외 2. 코로나 확진으로 14일 미만 입원치료 받았을 때 (치료비 접수가능) - 구조송환비용(특별비용) 보상불가 : 14일이상 입원 미충족 3. 선제적(우려/의심) PCR검사 비용</p>	<p>참고: 코로나 확진 후 의료기간 외 자가격리 치료시설에 대한 케이스는 발생시 보험사를 통해 재심사 필요. (국가별 지정시설 등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<p>3가지특약</p>	<p>※공제금액: 입원,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%중 큰 금액</p>	<p>도수치료,체외충격파치료,증식치료 실손의료비</p>	<p>350만원</p>	<p>180일간 50회</p>
		<p>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</p>	<p>250만원</p>	<p>180일간 50회</p>
		<p>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 실손의료비</p>	<p>300만원</p>	<p>제한 없음</p>
<p>배상책임손해</p>	<p>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(상해, 질병, 후유장해)를 입히거나, 타인의 재물을 멸실,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 항공기, 선박, 차량(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), 총기(공기총은 제외합니다)의 소유, 사용,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. 예)수상보트,오토바이, ATV, 전동카 등등</p>			
<p>휴대품손해 (분실제외)</p>	<p>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(도난, 파손)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 (또는 1쌍, 1개)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 단,통화,유가증권,신용카드,항공권,여권,콘택트렌즈,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</p>			
<p>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(특별비용)</p>	<p>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(또는 행방불명)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,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, 숙박비(2명x14일한도), 이송비용, 제압비를 보상</p>			
<p>항공기납치담보</p>	<p>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(최고 140만원)로 보상</p>			
<p>여권재발급비용</p>	<p>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/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(T/C:Travel Certification)를 발급받은 경우 (해외발생)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(국내발생)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. (보험기간내 여행증명서 발급기준 실비지급 /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용은 제외)</p>			
<p>식중독입원(2일이상)</p>	<p>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(식중독)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.(외래진료 제외)</p>			
<p>특정전염병</p>	<p>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.</p>			
<p>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(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험청구 必)</p>	<p>→ 항공기지연 : 예정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, 취소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. 지급사유 : 식사,간식, 전화통화, 숙박비,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→ 수하물지연 : 수하물이 손실(잃어버리는경우)되거나 항공편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. 지급사유 : 120시간 내에 발생한 생필품 및 의류의 긴급구입을 위한비용</p>			

<p>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</p>	<p>해외여행도중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(축소)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한도로 보상합니다.(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, 천재지변, 내란, 폭동 등 기타 이들의 유사한 사태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.

1. 만 15 세 미만 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(다만,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)
2. 상해담보는 해일(쓰나미), 지진,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
3.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, 휴대품 손해, 여권재발급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**보험계약(공제계약포함)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**
4. **3 가지 특약은 상해, 질병 모두 가입시 보장되며, 상해만 또는 질병만 선택 가입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**
5.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DB 손해보험 홈페이지(www.idbins.com) / 1588-0100 으로 문의 바랍니다.